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9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이기헌·조 국·조인철

김성회 · 허성무 · 김기표

허 영 · 임미애 · 채현일

복기왕・김 윤・강준현

박희승 · 조계워 · 박해철

김남근 • 김준형 • 황 희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,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.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.

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 도록 규정하면서,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음.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 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,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.

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 술 창·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(안 제11조제1 항). 법률 제 호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후단 중 "관할 소방서장"을 "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 공연장	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		
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			
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			
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			
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			
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		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			
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	l		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			
장・군수・구청장은 신고받은			
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	<u>관할 소방서</u>		
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장과 관할 경찰서장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